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토론회

‘광고는 기사와 별개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 게재, 이대로 좋은가?

발제

- 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회원)
: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 광고 게재의 현황과 영향
- 최원형(한겨레 노동조합 미디어국장)
: 신문 광고 윤리와 소수자 혐오

토론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정혜실(터네트워크 대표)
- 최경영(뉴스타파 기자)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일시	2015년 3월 6일(금) 19:30
장소	인권재단 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회	나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 광고 게재의 현황과 영향

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회원)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소수자 운동에는 “혐오는 의견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언행은 공론장에서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슬로건의 등장은 ‘동성애 찬반토론’ 구도를 거부한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그것이 특정 집단의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태도는 자긍심과 인권의식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성소수자 혐오가 낳는 해악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 때문에 술한 동료들을 잃었고, 존엄과 행복을 빼앗기고 있다.

여전히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 대상을 향한 ‘혐오’ 증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성소수자 혐오가 성소수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성소수자 혐오는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보다 더 쉽게 용인된다. 차별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현실, 성이라는 한국사회의 약한고리와 연결된 문제라는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보수 기독교와 우파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직적으로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성소수자는 ‘종북’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한국사회의 혐오받는 집단이 됐다.¹⁾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운동은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조직화했고, 박근혜 정권 들어 특히 기세를 올리는 양상이다. 이들은 기독교 우파 및 우파 정치 집단들과 밀접히 연결돼 한편에서 국가인권위원 등 요직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에서 반동성애운동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와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재현을 반대하면서 혐오를 근거로 삼는 동시에 조장하는데, 특히 주요 일간지 의견 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관심이 없거나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보수 언론들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방하는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마저 혐오 광고를 게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큰 실망감과 환멸을 불러왔다.

사실 언론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현실에서 모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광고 철회 압박으로 비판적 기사를 신지 못 한다면, 특정 사안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와 광고가 한 언론에 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신문윤리강령을 보면 혐오 광고 게재는 불가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버젓이 혐오세력 광고가 지면을 장식한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차별을 유지하고 조장하는 근거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성소수자 혐오가 성소수자 대중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1)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2014 관용과 신뢰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며느리가 남자라니’부터 ‘대한민국의 자살’까지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 제도에 반대하고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자가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하면서부터다. 2010년 5월 말, 6월 초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이 조선,중앙,동아,국민일보에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나”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냈다. “며느리가 남자라니”는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 때 동성애 혐오 세력이 만들어 국민일보가 띄운 구호였다. 2010년 8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발족했다. 9월부터는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는 구호가 사용됐고,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이 구체화됐다. 보수 기독교 단체부터 우익단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단체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영화 <친구사이?> 등급 관련 판결 등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함께 자극적인 사건을 통한 혐오 조장도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균형법 92조 위헌 의견을 밝히자 낸 광고 제목은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였다. 이어서 11월에는 한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이라는 글이 전면광고로 게재됐다. 광고 이후 월간조선은 글쓴이 인터뷰 형식으로 같은 내용을 기사로 싣기도 했다. 동성애자들의 문란함을 부각시키며 혐오를 부추기는 이 글은 만화 형식의 소책자로도 제작돼 꾸준히 배포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가 있었다. 2011년 3월 헌법재판소가 균형법 92조 합헌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의 글에는 ‘동성애 영적 전쟁 일지’라며 광고 게재를 비롯한 활동 내용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²⁾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등은 신문광고 게재를 비롯해 1인 시위, 기자회견, 국회의원 로비,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반대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극동방송, CTS 등 기독교 언론도 동성애 혐오 세력의 주요 발언대였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케이블TV 음란물 모방, 초등학교생들 ‘집단 동성간 성행위’

1. 케이블 TV 음란물 모방, 초등학교생들 집단 동성간 성행위

• 대구 달서구 A초교에서 6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급생들이 음란물 내용을 모방, 3~5학년 남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항문 성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6학년 학생들은 하급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고 동성간 성행위 등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 따돌림을 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수는 최소 50명에서 최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가해 학생들은 대부분 맞벌이부모 가정 출신으로 부모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음란물을 본 뒤 이를 모방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8.4.30)

2.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는 20대 남성끼리 애무하고 키스하며 서로의 성기에 손을 대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에 대해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으나, **이광범 관세우리법연구회**는 이 같은 청소년 보호 관정을 무시하고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가로 판결**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친구사이?’에 나오는 컷들이 많이 동성애를 보고 대구 초등학교생들이 집단 동성간 성행위를 따라할 것이다. 청소년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사법부의 이변 판결을 전국 학부모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3. TV 주말 드라마에 깊숙이 침투한 동성애 :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남자들이 함께 침대 드는가 하면, 노골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 • 김수현 작가가 요청한 동성애자 배우들의 선정 기준: “캐스팅할 때 두 사람이 무조건 보기 좋아야 한다. 깨끗하고 멀쩡한 청년이어야 한다...그래야 거부감이 없이 동성애를 보게 되고...”라고 주문했다. “수많은 청소년들 동성애자가 되어 AIDS 걸리도록 작정한 주연인가?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임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 • 2001년 이후 AIDS에 감염된 10대 남자 청소년 54%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 (복지위

이기우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4.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실문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는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변저가고 있다. (www.anticlone.kr)

5. 동성애는 AIDS를 확산시킨다. (AIDS로 인한 사망자 연간 약 210만명)

• AIDS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 (질병관리본부)
• 중남미지역 180만 명의 AIDS 환자 중 49%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
•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성관계를 맺는 상대가 3~4배가 많고, 양성애자인 경우가 많다. 양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에이즈가 확산된다.
• 70대 남성 A씨가 동성애 경력이 있는 **현혈자의 피를 받은 뒤 에이즈에 감염**했으며, 한 달 뒤 A씨의 부인도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질병관리본부)

6.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층인 부부 2명당 1.19명이다. 동성결혼이 만연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진다. (노동력 감소로 국가경제 몰락)

7. 동성애자가 과연 행복하겠는가? “내 나이 육십이 넘었는데 과거 내가 알고 있던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죽었거나 병들어 있습니다. 5, 60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술과 섹스로 지내고 있으며 대부분 에이즈나 B형, C형 간염에 걸려 죽음의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으며 거리에서 술과 약물과 섹스로 살다가 죽어갑니다. 이것이 인권입니까?”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이○○) •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기르다고 하지만, “남자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동성애 상담전화 ☎ 070-7505-3535)

국가와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 국민연합

국민연합: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3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4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5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6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7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8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9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0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1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2월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월14일(목)부터

초반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혐오 광고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저열한 논리와 주장을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인생은 아름다워>의 제작진이 혐오 광고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고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누린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현재 보수단체가 내고 있는 일간지 광고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응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면충돌보다는 논리적 반박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³⁾ 혐오 세력 조직화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했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한 이들도 있었다.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조직화하고 공세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성애혐오에 맞선 행동을 더 폭넓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와 차세기연은 ‘동성애혐오반대공동행동 열림’을 결성해 혐오반대 광고를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개인 213명과 단체 32곳이 모금에 동참해 2010년 9월 13일자 한겨레 신문에 광고가 실렸다. 9월 29일 조선일보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라는 광고가 실린 뒤 동인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열림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인권단체들에 제안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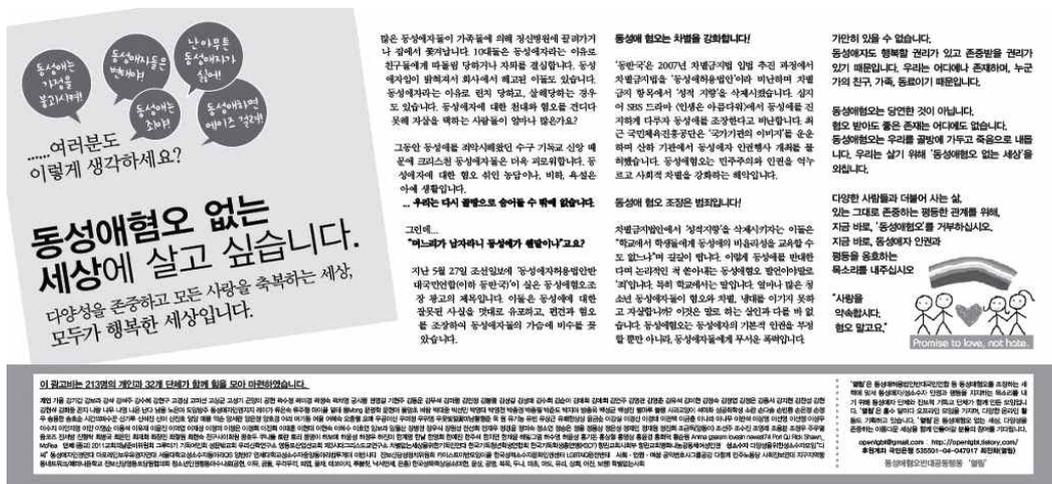


그림 2. 2010년 9월 10일 한겨레 게재 혐오반대 광고

2011년 말 성소수자들이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을 벌여 투쟁한 결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또 한 차례 혐오 광고들이 주요 일간지 전면 광고로 실린다. 2012년에는 방송예능프로그램 <XY그녀>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광고가 실렸고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2013년에는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에 반대하는 활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3월 한국교회연론회가 차별금지법 논평을 낸 뒤로 “차별금지법독소초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차별금지대책위: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연론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지를 만들어 전국 교회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차별금지법 반대 진단지 수만장이 배포됐고, 국회 안팎에서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온라인 의견게시가 벌어졌다.⁵⁾ 사상

3) 한겨레, 2010년 10월 29일 <‘동성애 반대’ 광고 진짜 목표는 ‘차별금지법’ 저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6342.html

4)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 랑, 2010년 10월 20일 <동성애혐오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http://lgbtpride.tistory.com/276>

5) <http://cfocus.co.kr/m/page/detail.html?no=1650>

의 자유, 전과 차별금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차별금지, 종교 차별금지가 주된 공격 대상이었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 지지 철회를 내걸었다. 통진당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북 게이’ 프레임도 동원됐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결국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해 큰 충격을 주었다. 발의 철회는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항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고 보수 기독교 압력으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됐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주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벌였다.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성소수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계기였다.



그림 3. 2014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 오마이뉴스)

6월 한국교회언론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자못 의견 광고다운 제목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포함한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다. 그러나 이 광고의 내용은 다른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혐오로 가득한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차별금지법안 철회에 이어 한겨레, 경향신문이 혐오 세력의 의견광고를 게재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때 처음으로 혐오세력 광고 게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겨레, 경향마저” 하는 정서가 존재한 것은 당연했다. 성소수자 인권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방했던 언론사들이었기 때문이다. 한겨레 광고담당자는 “동성애자의 생각을 이성애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업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둘 중 한 쪽의 의견만 지면에 실어야 하는가”라며, 동성애를 찬반이 가능한 문제로 보고, 인권보장을 위한 싸움을 일개 집단의 경쟁구도 썸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 ‘차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⁶⁾ 항의가 제기되자 사과 표명이 있기도 했지만 2014년에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한겨레, 경향의 혐오 세력 광고 게재는 개별 구성원의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이 요구되고 의견광고와 언론윤리,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에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2014년 3월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6) [무지개행동성명]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하는 광고 게재한 한겨레는 즉각 사과하고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하라! <http://lgbtact.org/?p=399>

로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의6 폐지안이 발의되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 명의로 “군대내의 동성애, 성추행 사건으로 불안해서 아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가 게재됐다. 동성애자를 성추행범, AIDS확산의 주범으로 가정하고, 군기강을 무너뜨린다는 단골 주장이 되풀이됐다. 이 광고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센트 국가에서 지원하고, 동성애로 에이즈가 급증하면 건강보험기금이 타격을 입고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후 혐오세력은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에 통과된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사업에 대한 비방과 공격, 귀어문화축제 비방과 개최 방해, 퍼레이드 저지 시도 등을 벌였다. 지방선거에서 동성애를 빌미로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공격도 벌어졌다.

윤 일병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폭력과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자 8월에는 “연간 수만 여명의 군인들이 성폭행(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다. 한국교회언론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대 내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동성애자 탓으로 돌리면서, 군형법 92조6 강화를 강화하고 동성애자 인권보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월에는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에이즈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실렸다. 이들은 에이즈 공포를 조장하면서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원인이라고 가르치라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군대 내 폭력, 성폭력 문제든 국가의 질병 정책이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만 양산하고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주장들이다.

하반기에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인권헌장이 표적이 됐다. 10월부터 대중 집회가 잇달아 열렸고, 신문광고도 연일 등장했다. 11월에 MBC PD수첩에서 동성애자 인권을 주제로 다루자 “광우병 선동 주범 MBC PD수첩, 이번에는 동성애 선동 주범?”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11월 28일 <경향신문> 광고를 통해 게재하자 12월 4일 “동성애자 체면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에는 에이즈 환자 인권침해로 에이즈 전문요양병원 지정이 취소된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으로 박원순 시장이 사과하자 이에 대해 비판하는 광고도 게재됐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이자스민, 임수경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 박근혜 대통령님...유럽에서 부도난 다문화정책을 중단해주세요.”라는 이주민 혐오 조장 광고가 게재됐다. 흥미로운 것은 성소수자 혐오 광고와 이주민 혐오 광고의 명목이 거의 일치하고, 모두 박원순 시장 공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광고들에는 국가인권위해체를바라는국민연대, 양성평등연대, 구국채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나라사랑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우익단체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한편 조선일보, 한겨레에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헌장에서 “동성애, 종교, 인권교육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의견광고가 실려 성소수자 혐오 조장 활동이 전국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2014년에는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공세가 정신없이 이어졌고, 차별금지법 등 대표적인 성소수자 관련 사안만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나 현안과 연결시켜 반동성애 캠페인을 대중적 수준에서 벌이는 양상으로 나아갔다. 우파적 본색을 분명히 드러낸 것도 인상적이다. 동시에 성소수자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주장은 주류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존중받고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혐오 광고의 영향과 효과

혐오 광고는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 혐오는 성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한다. 공공연히 비윤리적 존재, 치료 대상, 전염병 확산 주범, 가정과 국가 파탄의 주범이라는 말이 떠도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긍심, 안전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광고만이 아니라 뿌리부터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회에서 혐오는 다양하게 표출된다. 성소수자들은 비난 받거나 차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에 대해 솔직할 수 없고 존엄성을 훼손당하기 일수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높은 자살율은 혐오가 낳는 해악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결과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 문제가 최근에 와서야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혐오 일반을 비롯해 혐오 광고의 영향과 효과를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활동은 성소수자 운동이 지난 시절 이룩한 성과들과 사회적 변화를 무로 돌리려 한다.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 개념 전반을 위축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혐오 광고는 ‘국민정서’,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변명이나 성소수자 인권 보장 주장이 논란만 가열시킨다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 혐오는 사회적으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 여성, 가족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강화한다. 모두에게 더 위험한 사회가 되고, 획일적인 삶의 모습만이 강요된다. 서울시민인권헌장 공청회나 퀴어퍼레이드 현장에서 성소수자(또는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모욕과 폭력이 남긴 내상은 쉽사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어떤 대의와 명분에서든 타인에 대한 그런 방식의 적대가 가능한 사

회에 대한 환멸이 증폭된다.

혐오 광고는 단순한 혐오 표현과는 다르게 봐야한다. 혐오 광고는 반성소수자 대중 캠페인/운동의 일환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와 조직적인 혐오 조장, 선동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둘은 밀접히 연관돼 있고, 개인적 차원의 혐오 표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편견은 일반적으로 공론장에서 도전 받고, 변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편견에서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혐오 또한 규제로 없앨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평한 시합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용인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로 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때로는 제도가 인식 변화를 이끌 수도 있고, 사회적 경험이 인식을 변화시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두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다. 즉, 혐오 광고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함께 폭력, 차별, 규제 선동에 대한 자율적,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언론윤리이든 성윤리이든, 추상적 원칙은 경험을 통해 구체화되고 변화한다. 누군가에 대한 모욕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모욕은 용인되느냐가 저마다 다른 이유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성소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하필 의견 광고를 활용하는 것일까. 광고 활동은 엑소터스인터넷널 같은 몰락한 서구 반동성애운동 단체에게도 주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쟁점은 일상적으로 다뤄지는 주요 뉴스거리가 아니다. 성소수자들을 주변적, 예외적으로만 다루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성소수자가 가시화하면서 차별적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기성체제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합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돼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이런 진전을 되돌리기 위해 국가인원위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적인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흐름도 대중의 인식과 다양한 사회 영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노골적인 주류 언론이나 국가기구가 주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발언 통로를 확보하고 목청을 높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차별과 배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난이 정부의 책임회피와 진실 은폐를 돕듯이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소수자 혐오 광고에 대한 언론 내부의 고민과 논의를 거의 접할 수 없었던 현실은 안타깝다. 오늘날 성소수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인권보도준칙이 무색한 씩씩한 상황이다.

혐오 세력과의 싸움은 사실관계나 논리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올바른 정보와 성소수자들의 삶의 진실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에게 공정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수반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성소수자 혐오가 거대한 벽이라면 성소수자 혐오 세력은 그 벽에 달라붙은 오물들과 같다. 벽은 놔두고 오물만 처리한다고 해서 그 벽이 지키고 있는 불평등과 억압을 없앨 수는 없다. 성소수자 운동은 사회 전반을 향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민주언론실천을 표방하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진보적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혐

오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확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공통의 지향을 확인하고 연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벌어져야 한다. 성소수자들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혐오의 목소리는 설 곳을 잃을 것이다.

[참고] 성소수자 혐오 광고 게재 표

날짜	제목	주요 내용	게재언론	명의
2010.5.26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 동성애 조장하는 SBS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안내기운동을 시작합니다	동성애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립니다, AIDS확산, 동성부부 자녀 불행, 출산률 저하, 동성애는 유전이 아님	조선	동성애 허용법안 반대 국민연합
2010.5.28	동성애 조장하는 SBS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안내기운동을 시작합니다	상동	국민	상동
2010.6.4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말이냐! 동성애 조장하는 SBS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 안내기운동을 시작합니다	상동	중앙, 동아	상동
2010.9.29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가 판결 규탄, 동성애자 AIDS 감염확률 730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조선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
2010.10.8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다.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이다. 동성애자가 과연 행복하겠는가	국민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2010.10.14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케이블TV 음란물 모방, 초등학생들 '집단 동성간 성행위'	케이블TV음란물 모방, 초등학생들 집단 동성간 성행위, 친구사이 판결 규탄, 인생은 아름다워 규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AIDS를 확산시킨다, 출산율 저하, 동성애자가 행복하겠는가	중앙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2010.10.29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북한동포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확산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실상, 동성애허용하면 우리 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AIDS를 급속하게 확산시킨다	중앙, 조선, 국민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바성연
2010.11.10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귀남 법무부 장관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의원님, SBS 윤세영 회장님께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조선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바성연
2011.11.4	학부모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냅니다.	집회의 자유, 교권추락, 교실붕괴, 동성애와 임신출산 허용 반대 학부모가 힘을 모아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2012.1.4. (추정)	국민여러분,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학생들 임신 출산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민주통합당과 전교조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12월 19일 통과된 것을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이주호 장관님,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초등학생 동성애자 만들고/어린학생 임신출산 조장하는> 나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꼭 폐지시켜주세요.	초중고생 동성애 허용, 임신출산 허용, 종교 탄압, 조중생 정치활동 합법화, 교권붕괴, 학생인권조례폐기 백만시민주명운동 발대식	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서울, 국민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서울시부모유권자연맹 등

2012.1.11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망국 학생인권조례” 거부권 행사를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당론으로 밀어붙인 민주통합당과 전교조를 심판할 것이다. 김형두 판사는 광노현을 법대로 엄중히 처벌하라.	거부권 행사 지지 광노현 교육감 뇌물 공여 차별 촉구, 민주당/전교조 규탄, 동성애 찬성한 정동영 규탄, 학생인권조례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조선,중앙, 동아,국민	학생인권조례 폐기범 국민연대(참교육어머니전 국모임 등)
2012.9.12	트랜스젠더/성전환자 부 추기고 우리자녀 망치는 토크쇼 <XY그녀>를 KBS 는 즉각 방영 중단하라	케이블TV모방 초등학생 성폭행, 우리 자녀 연애상 담을 트랜스젠더에게 맡기 라니...정신나간KBS, <XY 그녀>sms 트랜스젠더 미 화, 시청료납부 거부	조선	자녀 교육 망 치는KBS반대 국민연합(참 교육어머니 전국모임 등)
2013.3.19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 는 “차별금지법” 학부모들 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 는 반대합니다	망국 차별금지법 대표 발 의한 김재연, 김한길, 최원 식 의원 사퇴하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 지,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비판	조선,중앙, 동아,국민	차별금지법 반대국민연 대(참교육어 머니전국모 임 등)
2013.5.23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님,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 헌법재판관님, 김한길,최원 식,김재연 국회의원님, MBC 김종국 사장님께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서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자녀들과 국가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은 반 대합니다. 선량한 국민대 다수 비하하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MBC 불시청 운 동을 시작합니다	중앙	차별금지법 반대국민 연대

2013.5.24/5.25/6.7/6.18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동성애는 가치중립적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도덕과 윤리의 문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 반대. 동성애 국제적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퇴폐적 사대주의, 동성애 치료 필요, 동성애는 국가적 현안, 한국교회는 애국적 종교, 기독교계는 동성애반대 계속할 것.	조선/국민 /한겨레/경향	한국교회언론회
2013.7.24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여예산 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센터' 반대	-	한국교회언론회
2014.4.3	박근혜 대통령님, 김관진 국방장관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님 군대내의 동성애,성추행 사건으로 불안해서 아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군형법 92조6 폐지 발의 반대, 군형법 92조6 폐지 주장은 반군행위, 군대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쳐 군대 보낸 아들이 게이 가 되어 전역할 것, 에이즈 감염 확산, 감염자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과 지자체를 통해 지출, 건보료 인상될 것	조선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어머니회
2014.8.28	연간 수만여명의 군인들이 성폭행(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방부장관님께 드리는 군부대 진단보고서	한국 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20대·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군형법 92조의6 강화 병영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시정	조선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연대
2014.9.4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교육부 부총리,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드리는 건의서	한국 에이즈확산 위험국가 지정, 에이즈 주요 전염경로는 동성애(항문성교), 에이즈가 초래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및 사회적 비용, 교육부 동성애친화적 교육, 질병관리본부,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미화 신문방송 비판	동아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합,성북구를 사랑하는 시민연합,군인성상담소 등

2014.9.25. /9.26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반대,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장, 엄청난 에이즈 치료비용 국민세금으로 100퍼센트 지원,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동양, 중앙, 국민, 한국, 경향	참교육어머니 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2014.10.18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민인권헌장>과 인권 정책의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인권도시 정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것, 특정 성향 인권단체들에 세금 지원할 것,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성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비난받고 처벌받게 될 것 다수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소수자가 다수에 비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업계의 주장은 모순된 주장	조선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양성평등연대, 구국채널, 유관순어머니회, 엄마부대봉사단, 나라지킴이여성연합, 119여성기도회, 탈북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2014.11.14	광우병 선동 주범MBC PD수첩, 이번에는 동성애 선동 주범? “거짓말은 동성애자 인권활동가들의 전술이다”	PD수첩 “게이,레즈비언, 안녕하십니까” 방송 비판, 동성애혐오 괴롭힘 학생가해자 주장, 엑스존 유해매체물 결정 정당, 독일사민당 라살레가 동성애자여서 사민주의가 지배적인 유럽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통이 있음, 유럽인권법원 판결 왜곡, 에이즈	조선	국가인권위해체를 위한 국민연대, 건사연,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구국채널, 바성연, 양성평등연대, 애국단체총협의회, 엄마부대봉사단, khTV 등
2014.11.26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똑바로 만들든지, 폐기하든지 하라	시민위원들이 전문위원들에게 받는 압력들, 주민 뜻과 무관하게 추진중인 서울시의 동성애 옹호 정책, 서울시민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음, 인권교육 강제, 서울시의 보수기독교 탄압	조선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건사연,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khTV, 한국교회언론회 등
2014.11.27. /12.11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	동성애문화 수용을 조장하는 인권헌장 문제점, 종교자유 침해와 이단 보호,	조선/한겨레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2014.11.28	현장 기초부터 선포까지 시민이 직접 만든다더니... 1천2백만 서울시민 우롱하는 비민주적 절차, 무원칙과 강압, 공권력의 횡포로 얼룩진 황당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	친동성애 성향 전문위원들 얼굴 감추고 회의에 참여하여 교묘하게 의견 주도, 사상의 자유,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 조항 문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시민위원 해촉사유, 전문위원 수, 발언 제지, 투표권 등 지적	조선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화 반대 시민연합
2014.12.4	동성애자 체면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원인,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은폐하려는 질병관리본부 보도지침,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예방교육,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 취소의 진실, 국가에이즈종합대책 우려	조선	국가인권위 해체를 바라는 국민연대, 건사연, 구국채널, 양성평등연대, 바성연, 엄마부대 봉사단, khTV
2014.12.17	추적60분인가? 소설60분인가? KBS 'AIDS 환자의 눈물'편	수동연세병원 주장	조선	수동연세요양병원
2014.12.19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단체에 사과, 1월에 협력 논의”	국민 다수 동성애 반대하는데 서울시 동성애 옹호, 한국은 동성애를 단속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지침으로 대학가에 동성애 단체가 생기고 동성애 옹호 풍조 자리잡음. 나라사랑단체들이 인권정책 방향 다시 모색해야.	국민	국가인권위 해체를 바라는 국민연대, 건사연, 구국채널, 나라사랑학부모회, 바성연, 양성평등연대, 엄마부대 봉사단, 한국교회 언론회, khTV
2015.1.19	이자스민, 임수경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자살' 박근혜 대통령님... 유럽에서 부도난 다문화정책을 중단해주세요.	이자스민의원 불법체류자 지원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 혈통적으로 순수한 한국 사라질 것, 서울시 불법체류자들에게 매년 수백억 원 지원 약속,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없애야, 유럽 다문화정책 실패	중앙, 동아	국가인권위 해체를 바라는 국민연대, 양성평등연대, 다문화정책 반대 다문화반대범국민실천연대, 엄마부대 봉사단 등

신문 광고 윤리와 소수자 혐오

최원형(한겨레 노동조합 미디어국장)

1. '동성애 혐오 광고' 게재 경위

- 2010년 9월13일, <한겨레> 4면에 '동성애 혐오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동성애혐오반대 공동행동 '열림') 광고 게재
- 2013년 6월7일, <한겨레> 26면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한국교회언론회) 광고 게재
- 2013년 6월13일, 한겨레 광고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규탄 성명 발표
- 2014년 11월말, 서울시의 인권헌장 채택 거부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애 지지할 수 없다" 발언 파문
- 2014년 11월27일, <조선일보> 32면에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 광고 게재
- 2014년 12월11일, <한겨레> 7면에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 광고 게재
- 2014년 12월12일, 한겨레 노동조합 '동성애 혐오 광고 게재에 대한 입장' 발표
- 2014년 12월말, 한겨레 광고윤리 관련 규정 정비 착수

2. 2010년-2013년-2014년, 무엇이 달라졌나?

=동성애 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차별에 대한 한겨레의 논조는 시종일관 뚜렷. 각종 기사와 사설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이를 무산시킨 시도에 대해서도 줄곧 비판. 지난해 11월31일치 '눈치만 보다가 무산된 서울시 인권헌장' 제목의 사설에서는 인권헌장을 사실상 채택하지 않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비판. "무엇보다 차별로 고통을 겪는 성소수자에 대한 연민과 배려는 종교적 차원에서나 보편인권의 차원에서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한사코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는 자칫 혐오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언행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반인권적 행태는 맞서야 할 대상이지, 눈치를 보거나 지레 굴복할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기사와 달리 광고에서는 들쭉날쭉한 태도로 안팎의 비판을 초래.

1) 2010년 한겨레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계기로 보수단체들이 일간지 등에 여러 차례 '동성애 혐오' 광고를 내는 와중에도, 이 광고를 받지 않고 동성애혐오반대공동행동의 대응 광고를 게재. 213명의 개인과 32개 단체가 힘을 모아 광고비를 마련.

2)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갈등이 한창이던 2013년에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보수 개신교 단체의 광고를 게재. 이 같은 조치는 안팎으로 강한 반발과 비판을 초래. 이

에 대해 광고를 수주한 수원지사 담당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과. 2014년초 광고국 간부 역시 노조와의 대화 가운데 “당시 광고는 부적절했다. 앞으로 그런 광고는 신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3) 그런데도 2014년 12월에 비슷한 일이 재발. 여기에는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언론사의 수익구조, ‘의견광고’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혐오 발화’를 ‘표현의 자유’로 탈바꿈시키는 최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함께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어.

3. 신문의 광고 윤리

=광고, 특히 상품광고와 다른 의견광고는 한겨레뿐 아니라 대다수 신문사 안팎에서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제. ‘광고의 자유’와 ‘광고에 대한 규제’가 첨예하게 맞부딪힐 수 있기 때문. 한쪽에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면, 다른 한 쪽에는 언론사의 공적 책임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 있어.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방송광고의 경우 공적인 통제 체제가 그런대로 갖춰져있지만, 어디까지나 사기업체인 신문사의 경우엔 그 같은 공적인 통제 체제가 없어. 현재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만든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에 따른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정도가 광고 윤리를 따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 볼 수 있어.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때문에 어떤 의견광고를 신느냐 안 신느냐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는 이유로 늘 안팎의 논란거리로 발전하기 마련. 한겨레의 경우, 2007년 대기업을 비판한 금속노조의 의견광고에 대해 “내용이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거제를 거부했다가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때로는 광고로 문제로 별이는 신문사-광고주의 줄다리기가 ‘광고 내용 때문이냐’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일도 생겨.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서는 강령3에 따라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강령4에 따라서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4. 상업 언론으로서의 한계

=언론사의 수익구조가 광고 수입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구조적인 배경. 미디어 시장이 격변하면서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언론사들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광고에서 최대한 매출을 끌어내기에 급급. 그러나 언론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광고주들은 대체로 대기업,

관공서 등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진보언론'을 표방하며 기득권 세력을 감시·비판하고 소수자·약자의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한겨레에게 '광고'는 매우 알맞은 영역. 한겨레 광고 영업자들은 '한겨레의 기본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매출을 창출하라'는, 거의 딜레마에 가까운 목표를 추구하게 돼. 이는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논리가 확산되는 배경이 됐을 가능성.

5. '표현의 자유'로 탈바꿈한 '혐오 발화'에 대한 둔감

=위와 같은 구조적인 배경 말고도, 최근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타인에 대한 혐오를 의견 또는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점점 무비판적으로 둔감해지는 분위기 자체임.

=지난해 12월 광주인권헌장을 반대하는 광고를 보면, "광주시 인권헌장과 인권조례가 우리 사회 약자, 소수자, 소외된 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로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 인권헌장의 모델이 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계각층의 국민이 화합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등의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이는 2013년 노골적인 동성애 반대 광고에 견줘 '온건한 의견'인 것처럼 포장한 것.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에이즈 등 동성애의 망국적 폐해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어떠한 대응책도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조항",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 등 분명한 소수자 혐오가 드러나있어.

=한겨레 내부에서는 의견광고와 관련해 일어나는 잦은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광고의 게재는 광고국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편집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이 광고의 경우 이례적으로 편집인이 직접 검토했는데도 '게재' 결정이 난 것.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편집인은 노조 인터뷰에서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게 아니면 폭넓게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소수자 혐오를 '의견'으로 포장한 것이 먹혀들어간 안타까운 현실.

6. 한겨레의 이후 조치

=노조의 입장 발표 등 내부의 문제 제기로, 광고윤리와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손보기로 결정. 편집인 스스로 "중요한 직책에 있더라도 한 개인이 판단하는 구조가 되어선 안되겠다"고 지적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광고의 게재 여부를 위임받은 여러 명이 함께 검토하는 '위원회' 형태의 심의 기구가 꾸려질 가능성 높아.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해 '이 같은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

=내부 노력과 함께 신문사 외부의 여론 중요. 여론에 민감한 언론사의 속성.

(부록)

동성애 혐오 광고에 대한 조합의 입장

〈한겨레〉 12월11일치 7면에는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전면광고가 실렸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가 의뢰한 이 광고는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자유 침해와 이단을 보호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성애 부분에 대해 “최근 서울시 인권헌장이 서울시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하는 것을 목도했다”, “에이즈 등 동성애의 망국적 폐해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인 어떠한 대응책도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며 강한 주장을 내놨다.

조합은 이 같은 ‘동성애 혐오’ 광고를 지면에 실은 결정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한겨레〉의 기본 정신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며,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한겨레〉는 지난해에도 6월 한국교회언론회가 의뢰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 있다. 이 광고에 대해 독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표방하는 〈한겨레〉마저 동성애 혐오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내부에서도 광고 게재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다시 동성애 혐오 광고를 지면에 실은 것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한겨레〉 내부의 인식이 크게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광고 집행에 대해 광고국 간부는 “광고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한겨레〉 독자들 역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는 의견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폭력이다. 때문에 조합은 〈한겨레〉의 동성애 혐오 광고 집행은 ‘의견 전달’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암묵적 동의’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이번 광고 집행이 광고국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편집인까지 보고되고 논의된 결과물이라는 점은 더욱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의견 광고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광고 집행에 대해 안팎에서 갖가지 논란이 일어나곤 했다. 조합은 그때마다 “논란이 될만한 광고는 광고국이 단독으로 집행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사적 차원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문제적인 광고가 집행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실상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만든다.

최근 우리는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쓰고 횡행하는 ‘시대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는 꾸준히 보편적 인권을 수호하는 것을 천명하며,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타인에 대해 적극적인 혐오감을 ‘의견’으로 포장해 표출하는 행태에 날선 비판을 해왔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문 시장에서 <한겨레>가 지속적인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 <한겨레>가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는 안일한 태도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면, 독자들은 점차 <한겨레>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떠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조합은 독자들과 해당 의견광고로 상처를 입었을 분들에 대한 공개 사과할 것을 회사에 요구한다. 아울러 의견광고 영역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등 실질적인 시스템 점검을 제안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공부 는 내부 구성원 모두의 몫이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 광고의 문제점을 딛고 서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미디어 전략으로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나는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꼼꼼히 보는 독자는 아니기에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 게재 소식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메시지나 SNS를 통해 접했다. 2010년 5월, 6월 SBS <인생은 아름다워> 드라마에 대한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면에 등장한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의 광고는 그간 일간지 지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성애에 대한 혐오 가득한 사람들이 표현할 법한 내용들로 가득 찼다. 당시 이를 본 활동가나 주변 성소수자들의 반응과 분노는 강렬했다. 우선 문구로 나온 논리들에 대한 실소와 대응 논의 그리고 지면의 광고비는 얼마인지 등 다양한 반응들로 분분했다.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감지한 것은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이로 인해 받은 충격과 분노는 컸지만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가 난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동성애 찬반 논쟁의 구도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전략에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지 등등의 고민들도 많았던 것이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몰려오는 이 거대한 싸움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무기력함을 느꼈다.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의 문제점

‘의견광고’라는 수단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지면 기사로는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보수언론의 광고 지면을 통해 비싼 광고비를 지불하면서도 노리고자 하는 효과가 분명했고, 언론은 이러한 혐오 표현들을 의견광고로 둔갑시켜 용인시켜 준 형국이었다. 의견광고가 ‘서로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특수한 광고활동 중의 하나’¹⁾라고 판단할 때, 해당 언론사는 결국 동성애는 찬반 논쟁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라 봤던 것이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광고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의견’광고에서도 디자인은 존재한다. 특정 문구에 대한 색깔과 강조 표시 등은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이미지를 주는 단어들로 집중한다. ‘동성애 조장, 집단 동성간 성행위, AIDS,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등등. 이는 결국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이 피켓 등을 통해 시각화한 혐오표현을 주요 일간지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어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낙인을 더욱 공고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2013년 결국 진보 언론에서도 이들 단체들의 광고 게재

나라 활동가의 발제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듯이 <인생은 아름다워> 로 시작한 이들의 광고는 성소수자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등장한다. 2010년 법무부가 제정을 시도한 차별금지법, 2011년 3월 군형법 92조 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 국가인권위의 위원

1) 이승선 (목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의견광고의 법적책임에 관한 고찰

의견,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그리고 2013년 차별금지법 발의 때 그리고 2014년 서울시 인권헌장 등 주요한 성소수자 인권이 명시되거나 포함된 법과 제도의 입법, 행정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부정이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원하지 않는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의 의견 표명으로 읽힌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에서 ‘모든’이란 문구에 적극 동의하지만, 법조항이나 인권조례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도 이 ‘모든’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면 이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은 절대 반대하고, 그것이 저출산, 세금폭탄 등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 가치와도 맞지 않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광고가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12월에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도 실렸다.

이를 접한 활동가들과 커뮤니티의 반응은 지난 2010년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SNS상에서 이 언론사에 대한 규탄 반응이 거셌고, 무지개행동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규탄하는 성명서(2013년 6월 13일, 2013년 6월 28일)를 각각 발표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 때를 회상하면 개인적으로 2010년에 겪었던 그 무기력감보다 더한 피로감이 있었다. 진보언론사에 대한 맹목적이었던 신뢰감이 그 이유였을 것이고, 진보언론사가 이런 광고비까지 받아야하는 실정이라는 것에 쓸데 없는 오지랴도 한몫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의견광고를 신는 보수 언론사와는 절대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단체의 언론 대응 논리가 무색해졌고, 그럼에도 한 줄이라도 더 노출시키기 위해 단체 보도자료를 진보 언론사에 보내는 내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다. 그들은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라 하는 데, 성소수자 인권운동하는 활동가로서 ‘그래 광고는 광고고 , 기사는 기사지.’라고 정리되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었다.

나는 이것이 한 활동가의 푸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해당 언론사가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데 사회적 쟁점에 대한 반대의견이기에 신는 다는 논리는 그것을 사회적 쟁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사의 존중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당시 2013, 2014년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실린 광고의 어투가 2010년의 그 날것과 사뭇 달랐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보이는 수사 안에 결국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혐오 표현이고, 차별인데 그것을 둔감하여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혐오세력들의 포장술이 그만큼 뛰어난 것일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된 언어로 표현하는 언론사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웃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정말 인권교육이 부족한 탓일까?

분노와 무기력감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미디어 전략

기실 이러한 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내는 의견광고는 해당 광고주 단체뿐만 아니라 제3자라고는 하나 지면을 제공한 언론사의 힘까지 읽혀진다. 일반 독자는 이를 해당 언론사와 무관하게 보지 않을 것이고 혐오세력은 그 힘을 읽고 있기 때문에 진보 언론사 등에도 지속적으로 의견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나라 활동가 역시 이들이 의견광고를 활용하는 이유로 지적했듯이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한계가 있지만, 결국 계속 말하고 떠들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공론화의 창구로 의견광고를 활용한다. 성소수자 인권 이슈가 기사화 되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와 맞물려 전면광고 등이 갖는 위력은 더욱 커 보이고 그것에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커뮤니티는 혐오세력에 대한 분노와 대응에 대한 무기력감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견광고를 게재여부를 논하는 언론사의 결정구조가 논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광고는 긴급을 요하는 보도나 해설이 아니다. 충분히 해당 광고국과 편집국의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언론사의 편집 방침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은 광고 수입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으로만 읽힌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진보언론이라면 언론노조 등을 통해서라도 광고 게재의 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공개해서 이 광고를 통해 겪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소수자 운동진영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혐오표현과 관련한 운동 기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다. 미디어 대응이라는 취지 아래 언론에 성소수자 관련 언론사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한 것이 오래지만, 현안들에 맞물려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미디어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기때문에, 이러한 성소수자 혐오 표현과 반인권적 논리가 의견광고로 버젓이 양산되고 있지만 대응이 부족한 현실이다. 미디어 대응이 아닌 전략으로 그리고 모니터링, 뉴스 클리핑으로 시작하는 운동이지만 결국에는 언론과의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제를 담은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비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의견광고를 틀에서 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미디어 운동 전략의 관점에서 기획이 필요한 접근이다. 혐오표현과 혐오세력들의 논리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시작해서 언론과의 관계 맺기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기때문에 우리의 당위가 분명하면 할수록 미디어 전략이 필요한 형국이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 게재, 이대로 좋은가

정혜실(TAW(터)네트워크 대표)

2009년 여름 일명 “보노짓 후세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인종차별 사건이 대대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가해자의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끝난 이 사건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더불어 이주관련제단체와 더불어 여성단체 및 인권관련 단체들로 이 이슈가 공유되고 논의되고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병헌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이주관련제단체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게 되었다. 그 당시 주 발제자 외에 토론자로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차원에서 불법체류이주노동자추방운동단체와 같은 합리적 의견을 가진 반이주민단체들을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 불렀다. 이와 더불어 플로어에서는 자유의견을 이유로 반다문화정책 소속의 회원들이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반대 뿐 아니라, 이주민의 유입이 가져올 범죄의 증가 우려와 민족의 혼혈문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방하면서 토론장이 아우성으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

민주적 정권의 시대에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민주적 가치로 여겨질 때나, 지금처럼 반민주적인 퇴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강력한 이주민 혐오세력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장외활동을 통한 혐오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뿜고 있으며, 지금도 그들은 발언이 혐오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그러한 행태를 용인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발언의 수위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며 의견의 한 부분으로 수렴되어 소수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인권감수성의 예민함을 세밀한 부분에서 잘 포착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의 후퇴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도 유엔보고서에서 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세월호 사건은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도, 이주민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수많은 자녀를 잃은 한국의 평범한 가족들의 고통이며, 그 배에 탔던 일반적인 사람들임에도 당해야 했던 고통임에도, 이들에 대한 일베의 혐오발언이나 혐오적인 영상물의 게시물이 도무지 납득이 어려운 수준에서 SNS 통해 유포되었고 유족들을 한층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 매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

그런가 하면, 최근 수원시는 중국동포에 의한 여성살해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수원시는 불법체류자 전수조사 또는 전 수원주민의 감시망을 확대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신고(ANY CALL) 유도과 같은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인과 이주민의 사이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이주민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강화하는 정책발언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수원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이다.

우리는 진보적 신문으로 자처하는 한겨레의 의견광고로서 성적 소수자와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를 봄에 있어서 이것이 신문광고의 윤리적 해석에 관한 부분으로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보듯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제대로 된 인식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혐오발언이 의견으로 수렴되고 용인되는 과정을 거

쳐 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혐오는 분명히 폭력이며,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며, 차별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언론과 미디어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혐오발언 관련 기사든 광고든 어떤 의견으로도 표현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수익이라는 구조적요인이 의견광고로 외피를 입은 혐오발언이 게재되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명백한 언론의 선언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이다. 더구나 조합에서 독자들과 해당 의견광고로 상처를 입었을 분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아울러 의견광고 영역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등 실질적인 시스템 점검을 제안하고,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공부는 내부 구성원 모두의 몫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과연 언론의 자정노력이나 조합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역할로 인해 규제되거나 강력한 권고조치로 인해 의견을 빙자한 혐오발언을 제지할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이다. 앞서 수익구조의 문제로 논의 된 바와 같이 결국 이익을 앞세우거나 보수세력의 확장과 공고화가 목적이 될 때, 언론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통제수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의견광고인 것이 아니라, 혐오를 내포하는 의견은 곧 그것이 어떤 언어로 포장되든 소수자를 향한 차별이며, 차별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어떻게 대중들로 하여금 설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목도하고 있다. 성소수자, 이주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같은 약자들을 향한 공격과 폭력의 상황을 말이다. 그것은 실질적 폭력, 또는 직접적 폭력일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언어적 폭력의 형태를 띠고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의 난무를 방관하는 세상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법의 제정이 능사가 아니며,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했던 지난 몇 년간의 운동을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는 형사 처벌적 효과로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더라도, 적어도 이것은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일이며, 잘못이라고 일깨워 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보수기독교세력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활동을 지지한 것과 다름없는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 가 한다. 그 투쟁은 강력한 깃발을 드는 것 못지않게 대중을 향한 설득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라 활동가의 말처럼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전반을 향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언론실천을 표방하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확대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공통의 지향을 확인하고 연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벌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삶을 지키는 싸움이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때, 혐오의 목소리는 설 곳을 잃을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중지하는 것의 시작이 모든 약자를 향한 혐오를 중지하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종차별뿐 아니라 장애인, 여성, 연령, 계급 차별 등 모든 차별에 대한 반대의 연대가 다시 강화되고 끈끈해져야 한다고 본다.